

## 자녀장학금지급규정

제 정	:	2003.10. 1
개 정	:	2009. 3. 1
개 정	:	2013. 9. 1
개 정	:	2017. 6.20
개 정	:	2019. 6. 1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교직원 자녀장학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자녀장학금지급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.

**제3조(용어의 정의)** 이 규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자녀 : 교직원의 자녀로 호적에 등재된 사람
2. 중학교, 고등학교 :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가받은 정규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력 인정 학교(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국내소재 외국인학교도 포함)
3. 대학 :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가받은 대학
4. 삭제
5. 삭제

**제4조(지급대상)** ①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전임교원의 자녀
2. 직원의 자녀(계약직원 포함)

②교직원의 근무년수 별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위 ①항의 장학금 지급 대상 교직원이 6개월 이상 근무 시, 중·고등학교는 100%, 1년 이상 근무 시 대학은 50%를 자녀장학금으로 지급한다.(단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)

2. 지급금액은 아래 5조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.

**제5조(지급기준)** ①자녀장학금의 지급내역은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(육성회비) 등 공납의 성격을 띤 납입금은 포함하되 학생회비, 보건비, 앨범비, 사은회비, 졸업준비비, 보충수업비, 교재비 등은 제외한다.

②자녀장학금 상한금액은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납입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중·고등학교의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고시한[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]정액표상의 분기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또한,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국내소재 외국인학교도 위와 같다.

2. 대학의 경우 지급액은 학기별 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, 지급하는 횟수는 총 8 회 이내로 한다. 다만, 의과대학 등과 같이 정규 수업연한이 4년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정규 수업연한만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.

③지급대상 산정 및 지급제한 기준일 등은 당해 학기초 월 1일로 한다.

**제6조(지급절차)** ①자녀장학금은 총장이 지급한다.

②자녀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경영지원팀에 제출 한다.

- 1. 장학금지급신청서 (지정양식) 1부
- 2.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1부
- 3.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
- 4. 입학금 및 등록금 납부 영수증 1부

**제7조(지급제한)** ①“삭제”

②지급효력은 당해 학기에 한하여 유효하다

③시간제 근무자, 휴직 중인 자 및 정년을 초과한 연봉제 직원의 자녀는 지급 제외 한다.

④외국소재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는 지급 제외한다.

⑤동일자녀의 장학금은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지급하며, 부부 중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한다.(중복수혜 금지)

**제8조(지급시기)** 자녀장학금은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익월에 지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이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7조 ⑤)